2010년도 단체교섭 협약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10년도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 2010년도 임금협약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 1부,
노사합의서 1부, 부속합의서 1부.

2010.10.28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이 석 채 이석채

KT 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김구현

2010년도 임금협약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10년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협약

○ 2010년도 임금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2010.10.25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이 석 채 이석채

KT 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김구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

1. 2010년도 복지기금은 700억원을 출연한다.

2. 복지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한다.

붙임 : 복지제도 개선사항 1부.

2010.10.25

주식회사 케이티
경영지원실장
권 사 일

KT 노동조합
사무처장
윤 오 원

[붙임]

복지제도 개선사항

1. 중학생자녀 교육보조비 신설

1)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교육보조비를 지원한다. 부부사원의 경우에는 직원 1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2)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전환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녀교육비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본 합의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행시기는 2011.3.1일자로 한다.

2.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 인하

1)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금 이자율을 현 3.0%에서 2.0%로 1.0%p 인하한다.

2) 적용시기는 2011.1.1일자로 한다.

3. 입원의료비 제외(단체보험 전환)

1) 단체보험에서 새로이 보장하는 직원의 '입원의료비'는 복지기금시행세칙 제76조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 선택적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1) 직원간 복지수혜 불균등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60만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 10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2011.1.6일자로 하고 2011년 이후는 노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5. 전 직원 아이패드(i-Pad) 지급

1)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아이패드(i-Pad)를 지급한다. (Wi-Fi Only, 16G)

2)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지급대상은 2011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3) 지급시기는 2011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1.6일자)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복지기금 신청 기준 완화 및 개선

1) 경조사비, 주택자금 대부신청, 유아/초등 교육보조비 신청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한다.

2)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 장학금, 교육보조비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3) 직원의 복지 수혜 편의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등을 단축한다.

4) 세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세칙 개정을 통해 따로 정한다.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인사·보수·복지제도의 운용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선하기로 합의한다.

붙임 :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사항 1부.

2010.10.25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이 석 채 이석채

KT 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김구현

[붙임]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사항

Ⅰ. 인사제도

1. 인사평가 그룹 통합

1) 인사평가 단위는 기준연봉 수준별 2개 그룹으로 평가한다.

○ 3천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2) 직책자(코디 포함), 입사 2년내의 신입사원 및 고객서비스직군은 별도 그룹을 유지하며, 동일 직책간에는 임금수준 고려 없이 통합하여 평가한다.

2. 인사평가 등급 및 분포비율 개선

1) 인사평가 등급에 C+ 등급을 신설한다.

2) 인사평가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명	A	B	C+	C	D	F
분포비율	10%	20%	20%	30%	15%	5%

3. 시행시기 : 2010년도 인사평가 시부터

Ⅱ. 보수제도

1. 기준연봉 체계 개선

1) 기준연봉을 '기준급'과 '역량급'으로 구분한다.

2) '기준급'은 기준연봉의 70%, '역량급'은 기준연봉의 30%로 하며 매년 동일 비율을 유지한다.

2. 기준연봉 인상방식 개선

1) 기준연봉 인상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다.

기준연봉	=	기준급×(1+개인성과평가 등급별 인상률)×α	+	역량급×(1+역량평가 등급별 인상률)×α

2) '임금조정계수(α)'는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다. 다만, α>1일 경우 인사평가 F등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준연봉 조정은 '임금조정계수'가 결정된 이후 당해 년도 1월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4) C+등급의 인사평가 인상률은 C등급과 동일하게 한다.

5) 인사평가 인상률은 종전 합의에 따라 최근 3개년 등급별 인상률에 가중치를 최근 순으로 50%, 30%, 20%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한다.

○ 2009년의 인사평가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성과평가' 등급별 인상률만을 적용한다.

○ 2011년은 2010년 60%, 2009년 40%의 가중치로 계산한다.

6)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방안을 별도 강구, 시행한다.

3. 성과급체계 개선

1) '기준급'을 12등분한 금액을 성과급의 지급 기준액으로 한다.

○ 성과급 지급산식 : 기준급/12×지급률

2) 직원의 성과급은 '전사성과급', '부문성과급', '팀성과급'으로 구분한다

3) 전사성과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전사성과급'의 기준지급률은 수익성과급과 성장성과급의 합으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수익성과급 : 300%+(영업이익률-9)×10
  . 영업이익률이 6% 이상, 8% 미만인 경우 : 285%+(영업이익률-6)×5
  . 영업이익률이 6% 미만일 경우 : 285%
  * 영업이익률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성장성과급 : 매출성장률×8.5

○ 전사성과급은 평가단위 최상위 부서(부문 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0%의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4) '부문성과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부문성과급'의 기준지급률은 300%로 한다.

○ '부문성과급'은 부서(지사, 담당 수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비직책자는 ±50%, 직책자(코디 포함)는 ±100%의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 팀 성과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팀성과급'의 차등률을 '부문성과급'의 차등률에 합산한다.

5) '팀성과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팀성과급'의 기준지급률은 150%로 한다.

○ '팀성과급'은 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0%의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 평가 대상 팀 및 평가방법은 성과평가단위 최상위 부서 (부문 등)에서 결정한다.
- 지사장 및 센터장에게는 해당 기관 팀성과급의 평균지급률을 적용한다.

6) 2010년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률이 확정되는 2011년도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시기별 차등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

4. 시행시기 : 2011. 1. 1일자

Ⅲ. 퇴직금제도

1. 평균임금 기준 변경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회사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월정액,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가산금, 휴일근무수당 포함), 직무환경수당, 직책수당을 3등분한 금액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 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 수당을 12등분한 금액

2) 적용시기는 2010.11.1일자로 하며, 2011년 단체협약 갱신시 이를 반영한다.

2. 퇴직연금제 도입

1)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으로 도입하며 2012년부터 1회에 한하여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전환시 전환일 현재 적립된 퇴직금을 포함한다.

3)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다.

4) 시행시기는 2011.1.1일자로 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1) 퇴직금 중간정산은 1,200억원(전 사원의 약 25%)범위내에서 퇴직연금제 전환전 실시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행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0.12.31일자를 기준으로 2011년 1월 중에 시행한다.

Ⅳ. 복지제도

1. 급식 및 통근보조비 기준 개선

1) 급식 및 통근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일 지급단가는 급식보조비 7,000원, 통근보조비 6,000원으로 한다.

○ 지급산식 : 출근일수×지급단가

2) 급식 및 통근보조비의 월 상한액은 급식보조비 147,000원, 통근보조비 126,000원으로 한다.

3) 적용시기는 2010. 11월 지급분부터로 한다.

2. 상조서비스 지원

1) 상조서비스 규모는 희망 직원 1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회사 지원금과 직원 부담금을 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2) 회사 지원금과 직원 부담금은 10년간 월 균등(회사, 직원 각 월 12,500원)하며 직원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3) 시행시기는 2011년 상반기 중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4) 상조서비스는 경조서비스를 포함한다.

3. 단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 확대

1) '재해사망'에 따른 보장수준을 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사망' 지원수준도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장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2) '교통사망'을 보장항목에 추가하고 보장수준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교통사망'의 보장은 직원 본인에 한한다.

3) '입원의료비'를 단체보험 보장항목에 추가하고 보장수준은 비급여 입원의료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으로 한다. '입원의료비'의 보장은

직원 본인에 한한다.

4) 시행시기는 2011.1.1일자로 한다.

Ⅴ. 기타 분야

1. 인건비 절감목표 초과 인센티브 지급

1) 2009년 대비 2010년 인건비 감소액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1년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 명예퇴직자 여행경비 지원수준 상향

1)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여행경비는 180만원 상당액을 지급한다.

2) 적용시기는 2011년 1월부터로 한다.

부 속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인사·보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 합의한다.

1. 인사평가단위 상향 조정 관련

○ 인사평가등급 C+ 내지 F 등급은 지사 분포율을 유지한다.
단, A 및 B등급은 단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단 단위의 인사평가등급 분포율은 유지한다.

○ 노동조합에서 인사평가결과 요청 시 평가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개인성과평가와 역량평가의 평가등급 차이는 ±1등급 이내로 한다.

3. α계수는 2011년 한 1.01이상 되도록 한다.

2010.10.25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인재경영실장

김 상 효

KT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무처장

윤 오 원